

1. 선박제원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명	ORIENTAL PEARL 8	
선박번호	9759202	
총톤수	24,748톤	
건조일자	2016.12.08	
선박용도	RORO PASSENGER (화객선)	
등록치수 (길이×너비×깊이)	185 X 25.8 X 15	
기관종류 및 출력	MAN B&W 9L48/60CR(Tier II)/ 10,800kw x 514rpm x 2 sets	
최대승선인원	총 1,588명 (여객 1,500명 , 선원 88명)	
최대 화물적재	총 214 TEU	
속력(노트)	최대 23노트 / 항해 18노트	
운항사업자	대룡해운(주) (국적 : 대한민국)	
선박국적	파나마	
기재일자	2019 년 09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정 홍 (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2/8)

기재 시 참고사항

1.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내용은 한글(필요시 영문 병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재번호 예시 : 1, 2, 3, ~
4. 선박명(선박번호)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2내지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선박번호) 및 사유를 기록한다.
※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
5.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보관하여 개정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의 도입		
매수일자	2019년 07월 1일	
매도자	DAEZER CONSTRUCTION CO., LTD., KOREA	
신조선·중고선 여부	중고선	
선박 도입 당시 선령		
선박의 매매		
매도일자		
매수자		
기재일자	2019년 09월 20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정 홍 (인)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항로명	평택 - 용안	
항해구역	외항	
출발지/종착지	평택/용안	
운항기간	2019년 09월 26일 ~	
기재일자	2019년 09월 20일	
<p>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 정 흥 (인)</p>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건조검사 /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검사일자	2019 년 08 월 14 일 ~ 2019 년 08 월 16 일	
검사기관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관 리 자	LIU BIN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기재일자	2019 년 09 월 20 일	
<p>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 정 홍 (인)</p>		

5. 해상사고 이력
 ※ 「해상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사고

(기재번호 : 1)

해양 사고 종류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기재항목	기재사항
사고일자	년 월 일 시 분
해양사고 종류	해당 없음
사고장소	해당 없음
사고경위	해당 없음
피해규모	해당 없음
기재일자	2019 년 09 월 20 일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업자 정 홍 (인)

6. 선박개조 이력 ※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		(기재번호 : 1)	
기재항목		기재사항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일자		년	월 일
허 가 자			
변경내용	변경 전	해당 없음	
	변경 후	해당 없음	
기재일자		2019 년 09 월 20 일	
<p>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 정 홍 (인)</p>			

※ 변경사항 표시 도면 및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첨부

기재 시 참고사항

1.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내용은 한글(필요시 영문 병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재번호 예시 : 1, 2, 3, ~
4. 선박명(선박번호)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2내지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선박번호) 및 사유를 기록한다.
※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
5.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보관하여 개정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